

# 2020년 지침 개정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

*2020. 01. 20~21*

 **국립중앙의료원**  
National Medical Center  
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



# Contents

---

1. 치매정책사업
2. 지침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
3. 사업별 주요 고려사항



# 01 치매정책 사업



# 01 치매정책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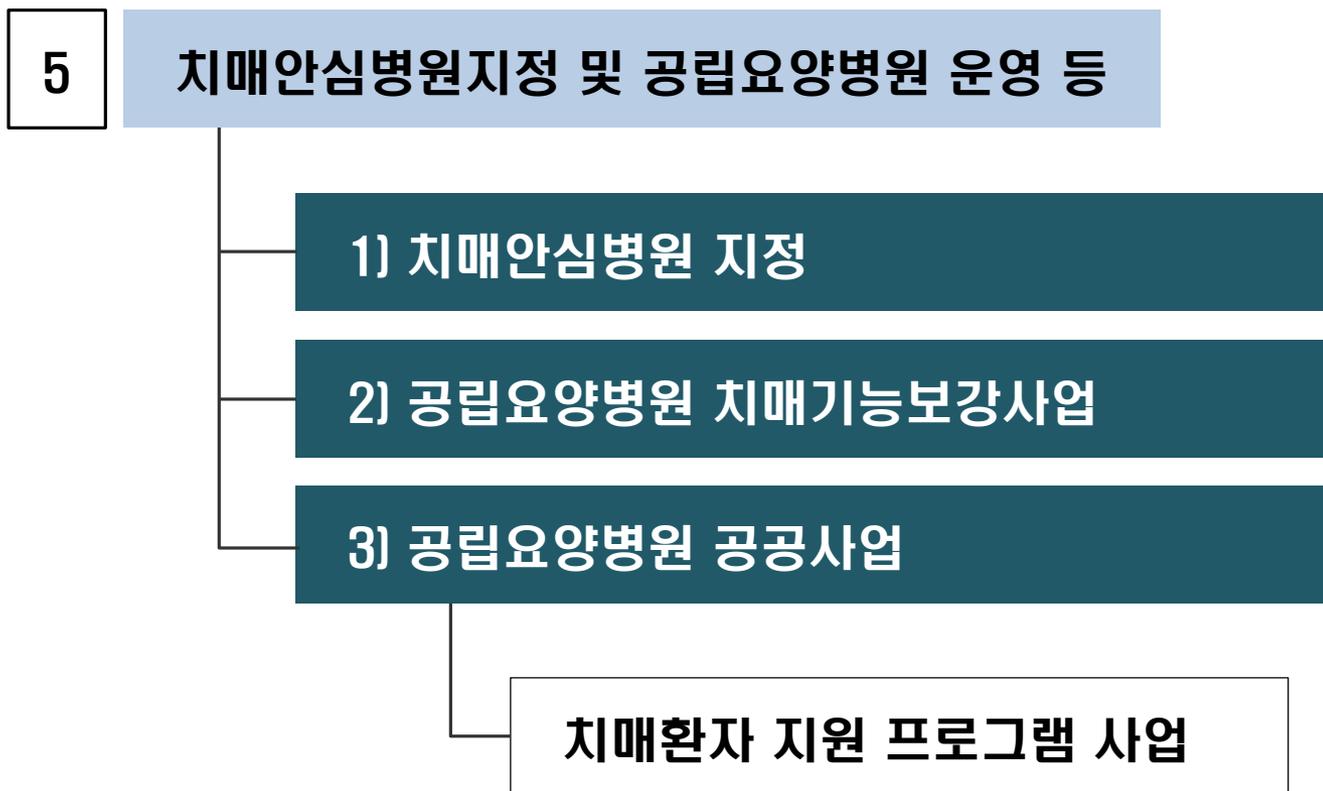
## 지원사업 종합

- 1 치매안심센터 운영
- 2 치매검진사업
-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- 4 광역 치매센터 운영
- 5 **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 등**
- 6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
- 7 치매공공후견 사업



# 01 치매정책 사업

## 지원사업 종합



# 01 치매정책 사업

지원 방향



- 치매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
- 치매관련 공공사업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공공성 및 역할 강화
  -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



# 02 지침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



# 02 [치매안심병원 지정] 지침개정 방향

1

## 인력 기준 명확화

- [기준]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. 다만,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

→ 비상근 임상심리사 : 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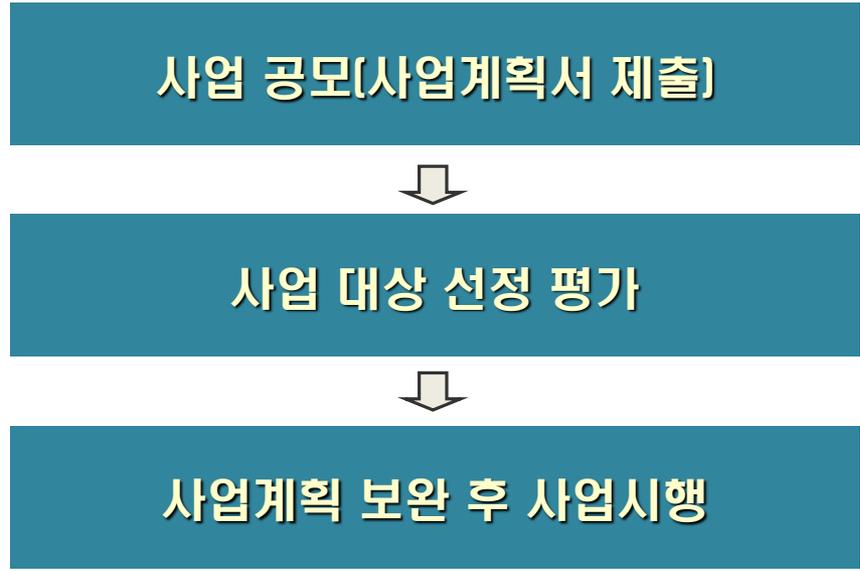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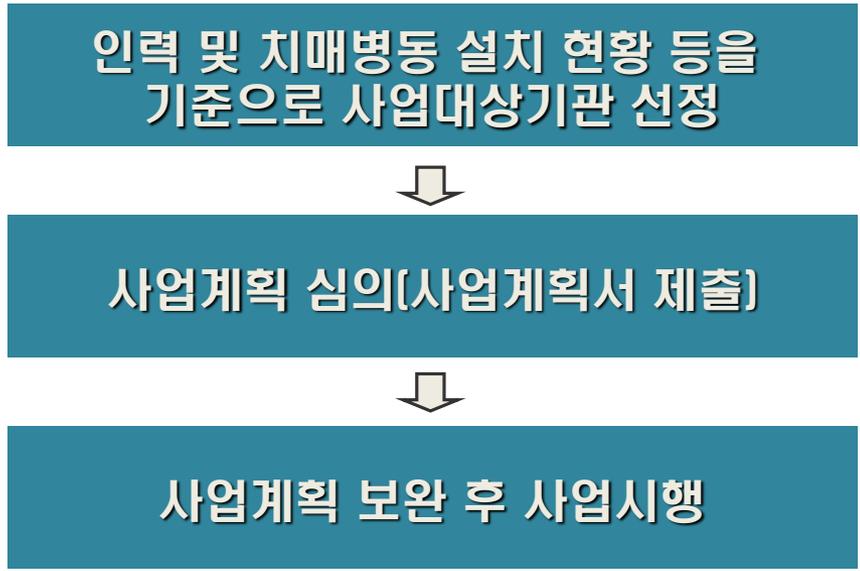


# 02 [기능보강사업] 지침 개정 방향

## 2-1 사업계획 공모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

[현행]

[변경]



# 02 [기능보강사업] 지침 개정 방향

2-2

## 지원 불가 항목 완화

-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수행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영상음향장비 품목 구매 인정(병동 프로그램실 또는 공용거실 내)

### [현행] 지원불가 항목

- 비고정 가구 및 집기류 등 비품(가구, 전자제품, PC용 컴퓨터 프로그램, 주방용품, 차량 등)
  - 단, 매트, 배회감지기, 낙상방지 시스템 등 치매 환자 케어 및 상두대, 불박이장 등 시설,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이전

### [변경] 지원불가 항목

- 비고정 가구 및 집기류 등 비품(가구, 전자제품, PC용 컴퓨터 프로그램, 주방용품, 차량 등)
  - 단, 치매환자 케어 품목 (매트·배회감지기·낙상방지 시스템), 프로그램실이나 공용거실 내 영상음향장비 및 시설·장비 운영에 필요한 고정형 품목(상두대·불박이장 등)은 인정

# 02 [치매환자 프로그램] 지침 개정 방향

## 3-1 지역내 연계, 협력사업 강화

- 5개 세부사업 중 “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” 사업 삭제,  
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을 위한 “지역 내 연계 · 협력” 사업 신설

\* 지역 내 연계 · 협력사업은 기존 성과지표에 포함 되어 있었던 내용

### [현행]

- ✓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
- ✓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
- ✓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- ✓ 치매 인식개선 사업
- ✓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위촉협조(권장)

### [변경]

- ✓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
- ✓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
- ✓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- ✓ 치매 인식개선 사업
- ✓ 지역 내 연계·협력사업 수행(추가)

# 02 [치매환자 프로그램] 지침 개정 방향

## 3-2 지원 범위 확대

- **전담인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품 임대 지원**
  - \* 본 사업비로 자산취득이 불가한바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용품은 임대로 지원
- **전담인력의 사생활 침해 고려 업무용 휴대전화 구매 및 운영 지원**
- **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모품으로 인정하여 비용으로 처리 허용, 방문간호에 필요한 방문간호용 의료용 키트 구매 지원 추가**
- **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(가족상담, 정보교환, 자조모임 지원)에 환자가족 심리안정을 위한 '여가활동 지원'추가**



# 02 [치매환자 프로그램] 지침 개정 방향

## 3-3

### 인력 활용 유연성 확대

- 인건비에서 단기계약직(일용인력) 집행 가능 추가
  - 요양병원은 행정인력이 부족하여,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일용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큰 상황으로 인건비에서 30일 이내 단기계약직(일용인력) 집행을 가능토록 완화
  
- 사업팀 구성에서 사업팀장 지정 완화
  - 신경과·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의 경우 일반 치매담당 의사를 사업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
  - \* 행정 총괄인력을 팀장으로 지정할 경우 신경과·신경외과·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치매환자 담당 의사는 팀원으로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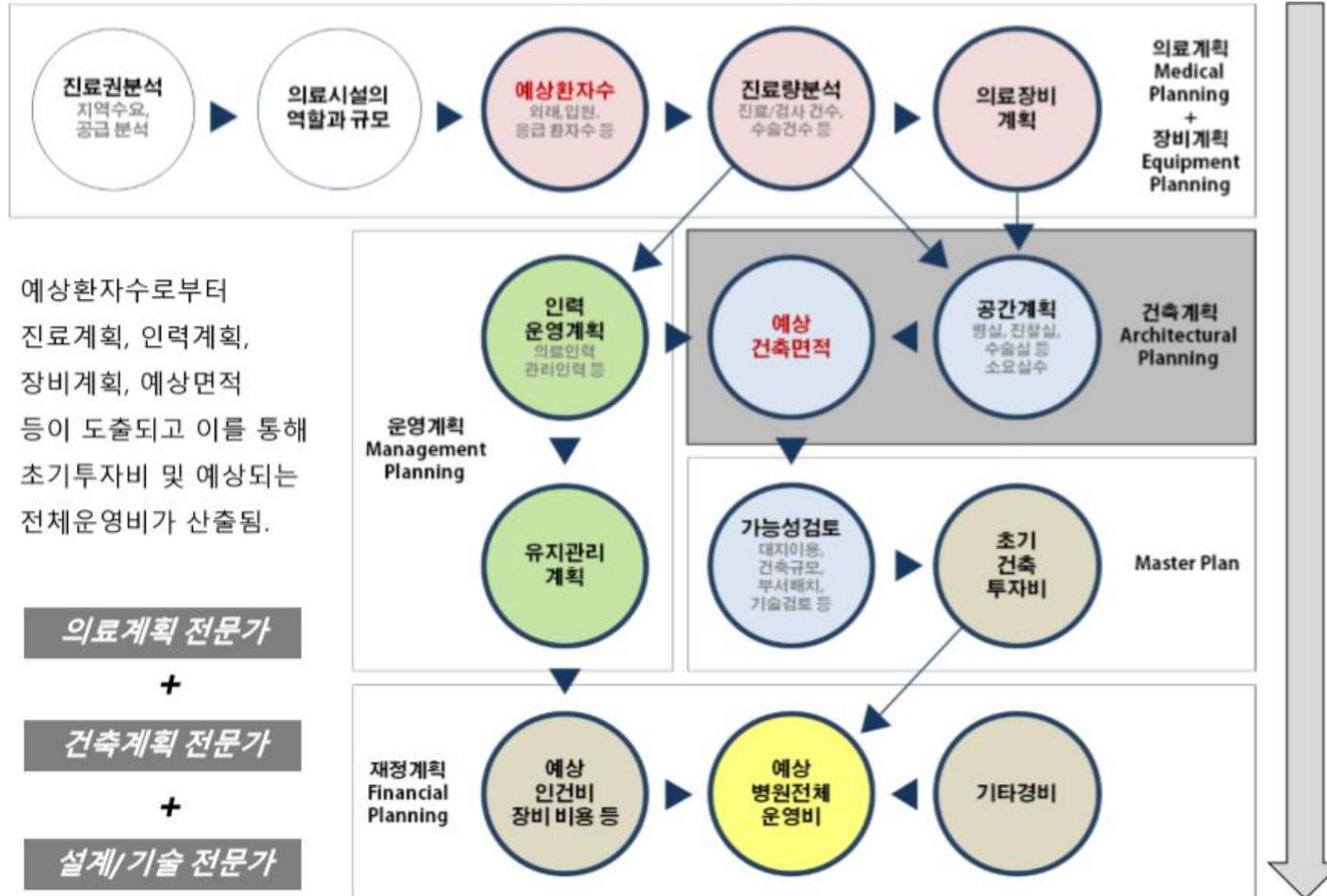


# 03 주요 고려사항



# 03 [기능보강 계획 시] 주요 고려사항

## 1-1 의료수요 및 공급, 인력 등 운영계획 등에 따른 적정 규모인가?



예상환자수로부터 진료계획, 인력계획, 장비계획, 예상면적 등이 도출되고 이를 통해 초기투자비 및 예상되는 전체운영비가 산출됨.

- 의료계획 전문가
- +
- 건축계획 전문가
- +
- 설계/기술 전문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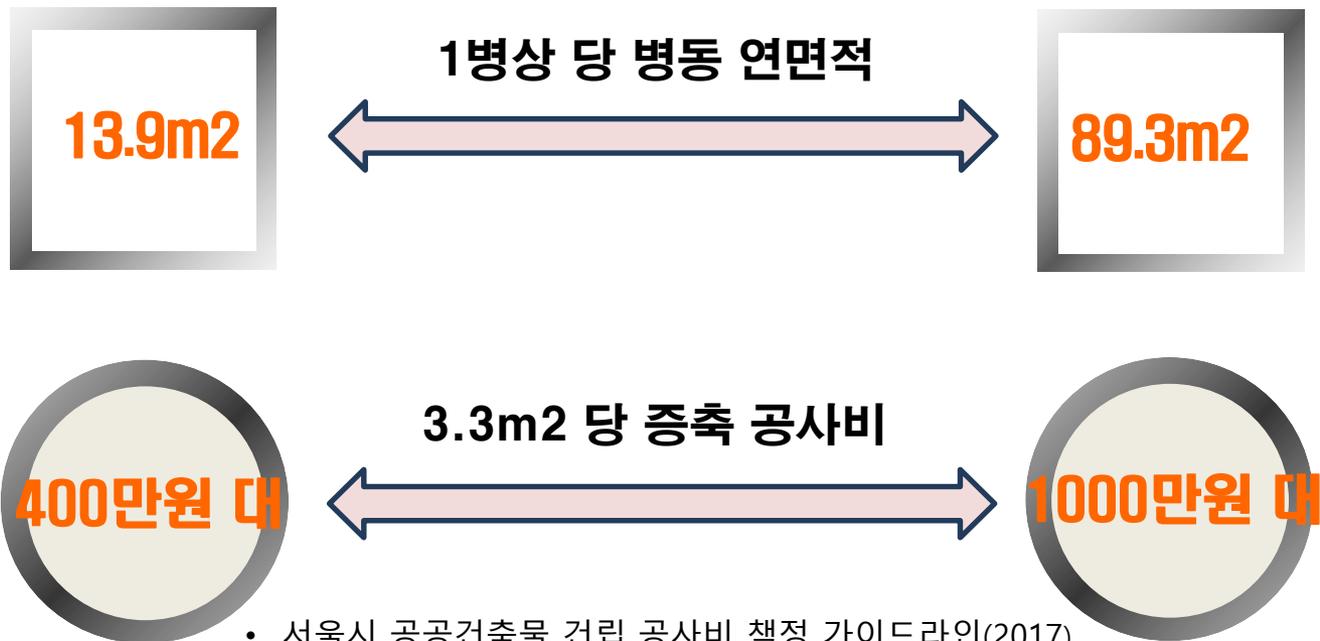
조준영(한양대) 자료

# 03 [기능보강 계획 시] 주요 고려사항

1-2

[병상] 규모 대비 건축 연면적, 사업비는 적정인가?

*과소 또는 과다 추계로 재설계 또는 설계변경 사례 빈번 !!*



→ 3.3m<sup>2</sup>당 870만원



# 03 [기능보강 계획 시] 주요 고려사항

## 1-3 [요양]병원 특성을 반영한 건축 구조인가?



병동 폭도 폭(2.7m 이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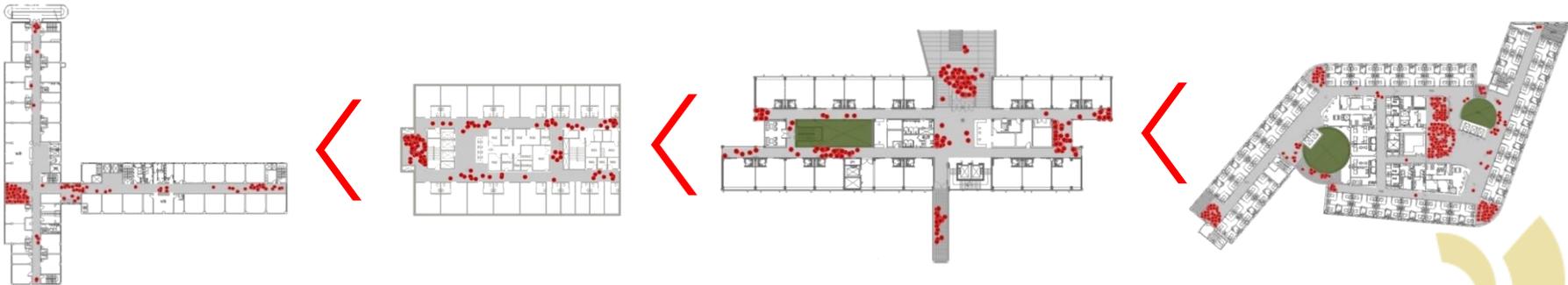
# 03 [기능보강 계획 시] 주요 고려사항

## 1-4 수용시설이 아닌 치유환경으로 계획되었는가?

중정, 데이룸 등 자연환경에 접하는 공간이 많을수록 치유(긍정적 행위와 군집)에 영향



VS



<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손지혜 연구에 의한,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>

# 03 [기능보강 계획 시] 주요 고려사항

1-5

환자안전 등 요양병원에서 다루어야 할 요소가 반영되었는가?

## 안전성

- 사고예방 (무장애 디자인, 낙상방지, 미끄럼 방지)
- 응급상황 대처(긴급 대피장소 확보 등)
- 감염예방 (손위생 위생설비, 격리실 등)

## 접근성

- 이동동선 확보 (휠체어 및 병상 이동 가능 폭 확보)
- 길찾기 계획(단순한 공간 구조, 출입구 등은 눈에 띄게 계획)
- 사인계획

## 간호

- 환자 관찰 (환자 관찰이 용이한 곳에 스테이션 설치)
- 간호사 편의 및 감염관리 부속실(오물처리실, 청결물실 등)



# 03 [기능보강 계획 시] 주요 고려사항

## 1-6 사업 지원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인가?(부적정 집행)

- ◆ 지원 불가 항목(비품류) 구매 불가
- ◆ 승인 사업 범위 외 공사 시행 및 승인 장비 외 사업비 집행 불가
- ◆ 치매치료와 관련 없는 장비 구매 불가



**완료 정산 시 부적정 집행액 환수**



# 03 [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] 주요 고려사항

## 2-1 지원 및 집행기준에 적합한가?

- ◆ 자산취득 불가
- ◆ “치매 친화적 환경조성비용” 은 운영비 기준(전담인력 1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) 50% 초과 금지
- ◆ 인건비는 본 사업팀 1명에 대하여 지급 가능(신규 채용이든 기존 인력 활용이든 관계없이 사업팀 소속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)
- ◆ 모든 집행 내역은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, 미비 시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



**완료 정산 시 부적정 집행액 환수**



# 03 [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] 주요 고려사항

## 2-2 사업 대상 및 범위로 적합한가?

- ◆ 협의체 구성 대상에 (추가)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을 노인이 이용하거나 치매와 관련성 있는 기관으로 한정
  - ◆ 치매환자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,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일체의 의료행위는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
- 예) 환자 대상 프로그램 진행,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임대나 구입



감사합니다.

